

## '22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

한강유역환경청에서 '22.2월부터 소량(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)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업체가 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 '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'를 시행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### □ 서비스 개요

- (이용대상자) 지정폐기물을 소량(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)으로 배출하는 가정, 학교, 소규모 공장 등
- (대상폐기물) 폐페인트, 폐유기용제, 폐유, 폐락카, 폐흡착제, 폐촉매,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
- (운영기간) '22. 2월 ~ 12월
- (운영체계도 및 이용절차) ※ 주의사항(1~3번) 필히 확인하세요.

① 배출자가 권역별 담당접수처(운반 또는 처리업소)에 유선으로 소량폐기물 처리 신청



② 권역별 담당접수처는 처리신청 내역을 권역별 운반담당업소에 인계 또는 수거



③ 권역별 운반담당업소가 배출자에게 연락하여 폐기물 수거일정 안내 후 수거처리

주의사항1) 방문수거 시 처리비용 정산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

※ 대상폐기물(폐페인트 등 7종의 소각 가능 폐기물) 및 폐기물량이 적합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

주의사항2) 폐기물이 10kg 미만인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접수처에 직접운반 가능(접수처와 유선 협의)

※ 단, 배출자 직접운반시 폐페인트 고상폐기물은 위험성이 낮고 굳어있는 고상에 한해 50kg까지, 그 외 고상 폐기물은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20kg까지 허용(사고발생시 배출자 책임)

주의사항3) 처리비용(600원/kg) 및 정액방문비(20,000원/회)은 소량폐기물 배출자 부담(단,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정액방문비는 제외)

※ 폐기물 운반업소가 배출자 별 수거 일정을 취합·조정하는 관계로 수거까지 약 1개월 이상 소요(12월초 접수분까지 수거) 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.

### □ 서비스 신청방법

-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아래 표에 따라 권역별 해당 접수처에 유선으로 신청

권 역	접 수 처	
	2월~6월(상반기)	7월~12월(하반기)
인천(강화제외)	(주)케이비아이텍(032-571-3224)	(주)이알지서비스(032-822-2961)
김포 · 강화	그린스코(주) (032-812-6611)	
서울북부	대일개발(주)(031-498-1451)	한국환경개발(주) (031-498-6644 내선1번)
서울남부	성림유화(주)(031-499-3711)	
경기북부	케이지이티에스(주)(031-488-1192)	
경기남부(김포제외)	신대한정유산업(주)(031-352-3831)	뉴그린(주)(031-682-2700 내선1번)

\* 서비스 운영관련 문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(전화 031-790-2813)로 연락바랍니다.